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5년 8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257호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위촉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대외 보안이 요구되거나,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위원회에서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전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안전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4. 특정한 안전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기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전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군산 시 조례 제36호)」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군산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로 한다.

⑦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군산시의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군산시 청문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군산시의정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기준」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군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군산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여비율 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④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⑤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⑥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⑦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⑧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⑨ 「군산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⑩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⑪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⑫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③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④ 「군산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⑤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⑥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⑦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⑧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⑨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⑩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1 「군산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2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3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4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5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6 「군산시 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7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8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9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0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1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2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기준」이”을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로 한다.

⑥3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4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5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6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7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8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로 한다.

⑥9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0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2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3 「군산시 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4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5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6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7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군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8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258호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 또는 삭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내 산하기관, 시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홍보)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

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5년 8월 3일

군산시 조례 제1259호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 청소년 육성기본조례」에 따른 군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관계관, 경찰서 청소년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시 어느 한쪽 성(性)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산시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 소속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산시의회 의원 및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공고 제2015-1200호**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조례에서 이미 납부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하여 시민들에게 부당한 금전부가 사항을 개정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위함

2.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환불 조문 신설(안 제42조제3항제3조)

가.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해당분에 대하여 환불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산림녹지과

(전화: 454-2982, FAX:454-2949)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산림녹지과 공원관리(454-2982)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점용료 등) ①·② (생략)</p> <p>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신 설></p> <p>④ (생략)</p>	<p>제42조(점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u></p> <p>④ (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5 - 1201호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
- 그 동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법적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했음.
-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위기 사유에 처한 위기 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다. 지원의 신청 및 현장확인(안 제4조~제5조)
- 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안 제6조)
-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바.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2015.08.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3-370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063-454-3084, 팩스 063-454-308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산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군산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가구구성원이 중증장애 및 중증질환, 노인 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1.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통장 등이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확인) 시장은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이·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

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5-1204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정” 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 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3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 573-370)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2) 전화 : 063-454-3085

3) 팩스 : 063-454-3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전화 : 063-454-30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군산시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_저소득주민_생활안정_지원에_관한_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지원비용”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업무에 <u>소요되는 총 비용</u>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필요한----- -----.</p>
<p>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시장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 2. (생략)</p> <p>3. 「<u>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u>」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가정</p> <p>4. <u>기타</u>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지원기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생략)</p>	<p>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u>」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p> <p>4.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품의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p>	<p>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따른</u>----- -----.</p>

한다.

④ (생략)

제9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의 결정) -----제6
조에 따라-----
 -----제7조에 따라-----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공고 제2015-1205호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 제 1293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자” 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자” 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2호)하고 안 제2조제1항제3호·4호 삭제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3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 573-370)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2) 전화 : 063-454-3085

3) 팩스 : 063-454-3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전화 : 063-454-30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군산시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_저소득주민_생활안정_지원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_저소득주민_생활안정_지원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자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생 략)</p> <p>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자.</p> <p>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하는 중소도시 재산범위특례 이하의 재산가액을 보유한 자.</p> <p>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다음 각목의 경우</p> <p>가.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있</p>	<p>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이고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하인 자</p> <p><삭 제></p> <p><삭 제></p>

는 가구

나. 만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 가구

다.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

라.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가

구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

행령」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

사례관리대상 가구

사. 위의 각 조건을 충족하고

가구내 금융자산 초과자중

과다채무로 부채를 공제하

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 규칙(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 군산시청공고 제2015-1214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및 타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장 임기 3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 타 법령(기간제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함 (안 제6조의2, 2항)

나. 센터장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탁계약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제8조 제2항)

다. 종전의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센터 등록 조항은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지 않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상충되므로 이를 자원봉사 관련 실적 등의 관리로 내용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8조 제7항)

라.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자치부와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시·군에서는 지원 근거가 될 수 없어 내용을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1조)

마. 보험가입 절차에 대한 조항 일부를 정비하여 센터에서 보험을 체결하는 현 운영 상황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16조 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21일 까지 군산시장(참조 : 가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 주소 : (우)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
- 팩스 : 063-452-94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전화 : 063-454-31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하거나 이를”을 “행하거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제4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4조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및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제1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각각 “센터”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제1호 중 “시 지역”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 지역의”를 “지역사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법인에게”를 “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

리 할 수 있다.

제8조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회계 년도”를 “회계연도”로, “회계 년”을 “회계연”으로, “시장 등”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 년도”를 “회계연도”로, “회계 년도 2월말까지 시장 등”을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 년”을 “회계연”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을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할”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로 한다.

제14조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다음 각 호와-----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행하거나----- -----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 12. (생략)</p> <p>13. <u>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u></p> <p>14. · 15. (생략)</p>	<p>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 ---다음 각 호와--.</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u></p> <p>14. · 15.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u>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p> <p>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p> <p>① ----- ----<u>마련</u>----- ----- ----- -----.</p>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 3. (생략)
-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 (생략)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6조의2(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시 지역의 기관·단체 들과의

② -----다음 각 호와 --.

- 1. ~ 3. (현행과 같음)
- 4. -----및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 -----

-----그 밖 -----
--센터 -----
-----.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 -----

상시협력체계 구축

2. ~ 5. (생략)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하여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생략)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2.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사회의 -----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 -----
-----법인에 -----

-----.

② -----

-----2년 -----
-----.

③ 센터 -----

-----.

④ (현행과 같음)

⑤ 센터 -----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
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
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
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
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
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⑧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
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년도의 수입·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
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년도 2월말까지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
· 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 -----
-----.

⑥ 제5항에 따른 -----

-----.

⑦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
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
-----.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회계연도 -----
-----회계연도 -----
-----시장 -----
---. -----
-----.

② -----회계연도 -----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시장 -----
-----.

③ -----

회계기록을 회계 년도 경과 후 5
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
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
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
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
사주간) ① (생 략)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
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
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
체 등은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1. ~ 5. (생 략)

제14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
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
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
상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자원

---회계연 -----

-----.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

-----있으며, 자원봉
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
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
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
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
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포상) -----

-----센터 ---
-----.

제16조(보험가입) ① -----센터

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 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 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 --.
3.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군산시청공고 제2015-1215호**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경된 조례명과 서식 등 최신 내용으로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수정 및 수당 조항을 신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원구성에 있어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제10조제3항)
- 나. 종전의 모호했던 운영위원회 기능을 센터 운영 지침에 맞게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11조)
- 다. 누락되었던 운영위원회 수당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5조)
- 라. 직원 보수 기준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기본급 최저기준표」 로 변경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19조)
- 마.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가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제25조)
- 바. 변경된 자원봉사관련 서식으로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7조)
- 사. 불합리한 보험가입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2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21일 까지 군산시장(참조 : 가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 주소 : (우)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
- 팩스 : 063-452-94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가족청소년과(전화 : 063-454-31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요구하는 때”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5항의 규정”을 “제8조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중에서”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수행할”을 “수행 할”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호 중 “운영의 중요사항”을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개최할”을 “운영위원회를 개최 할”로, “대체할”을 “대체 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8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기본급 최저기준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별지”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앞의 “제4장 자원봉사진흥 및 보험가입”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시행에</u> ----- ----- -----.</p>
<p>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에</u> <u>해당하는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u> <u>위촉한다.</u></p>
<p>1. ~ 4. (생략) 제3조(임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 기간</u>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임기) ----- ----- -----<u>남은 임기로</u> ----- -----.</p>
<p>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때</u>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u>요구하는 때</u> 이를 소집한다.</p>	<p>제6조(회의) ① ----- -----<u>인정하는 경우</u> ----- ----- -----<u>요구하는 경우</u> ----- -----.</p>
<p>② (생략)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u>대하여</u>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p>	<p>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 -----<u>대해서</u> ----- ----- ----- -----.</p>

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① 조례 제8조5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④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⑤ (생략)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① -----제8조5항 -----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수행할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능) -----
-----.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⑤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센터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운영위원회를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운영위원회의 -----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
영위원회를 개최 할 -----
-----대체
할 -----.

⑥운영위원회의 -----

-----.

제14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

-----.

제1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제17조(직원의 임용)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

③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19조(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계약을 통하여 연봉제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③ (생략)

제25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에 따라 센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직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해당 -----
-----.

③ -----
-----대해서 -----

--.

제18조(결격사유) -----
-----각 호 -----
-----.

제19조(보수) ① -----
-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기본급 최저기준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보조금 관리) ① -----

해당연 -----.

야 한다.

② (생략)

③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제1항의 결과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제4장 자원봉사진흥 및 보험가입

제29조(보험 가입) ① 조례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자원봉사보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 환경등 사고발생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센터에 자원봉사자로

② (현행과 같음)

③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26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필요한 경우 -----
-----.

제27조(서식 및 대장 비치) -----

--별지 -----
-----.

1. ~ 1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등록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한
자중 보험기간이 만료하여 재가입
시 연간 5시간이상 봉사활동한자
에 한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
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5-1217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군 산 시 장

직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법률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
 - ▶ 위원회의 구성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호)
 - ▶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군산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띄어쓰기 수정
 - ▶ 의하여 → 따라
 - ▶ 각호의 규정에 의거 → 각 호에 따라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월 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청(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감사담당관(감사계)

- 전화 : 063)454-2114, FAX : 454-2109, 전자우편 : djc761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감사계 (전화 454-2114)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명의 위원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을 “3명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을 “2명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공직자 윤리법</u>」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u>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u>의 ----- ----- ----- ----- -----.</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제2조(구성) ① <u>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p>
<p>1. <u>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u></p>	<p>1. <u>3명 -----,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u></p>
<p>2. <u>2인의 위원은 군산시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p>2. <u>2명의 위원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u></p>	<p>② -----</p>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1. (생략)
-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4. (생략)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2. (생략)

<신설>

-----각 호에
따라 -----.

- 1. -----3명 중
-----.
- 2. -----2명 중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 2. 「공직자윤리법」 -----

3. 4.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
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군산시 공고 제 2015-1236호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8. 3.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 동안의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에 반영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자치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 시달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안 제7조)
 - 주민자치회 위원자격의 만 나이 명확한 적용시점 기준 마련함
 - 위원자격에 해당사업장 종사자, 각급학교·기관·단체의 장까지 범위를 확대함
- 위원의 선정(안 제9조)
 -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의 공개모집에서 각급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변경함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시 각호의 추천인원을 명시하여 주민자치 위원회
공정한 선출기준을 마련함

○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안 제20조)

- 해당 학교장·기관장·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당연 해촉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전화:454-2603, FAX:454-2579, 전자우편:jys7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계(전화: 454-2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

제8조제2호 중 “위탁”을 “수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제9조제2항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각 호”로, “정하여예비후보”를 “정하여예비후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읍·면·동장 추천위원 3명

제10조제2항제2호 중 “추천위원”을 “추천위원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위원”을 “추천위원 3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 학교장·기관장·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옥산면에 한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종료시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u>공직선거법</u>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u>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u> <p><신 설></p> <p>② (생략)</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 ----<u>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u> ----- ----- 「<u>공직선거법</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u> <u>해당 읍·면·동에 소재한</u> <u>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u>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u>위탁 권한</u>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u>수탁처리 권한</u> (생략) 	<p>제8조(권한)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수탁 권한</u> ----- ----- ----- ----- (현행과 같음)
<p>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p>	<p>제9조(위원의 선정) ① -----</p>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1. (생략)
- 2.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3. (생략)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 ⑦ (생략)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1. 읍·면·동장 추천위원
- 2. 읍·면·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 3. 읍·면·동별 이·통장협의회 추천위원

③ ~ ⑥ (생략)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

- 1. (현행과 같음)
- 2. 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정하여 예비후보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읍·면·동장 추천위원 3명
- 2. -----
--추천위원 3명
- 3. -----
-추천위원 3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4. (생략)

②·③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학교장·기관장·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15 - 9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동 관련 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7월 17 일

1.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제1송전선로	구암동	개정동	-	3.527	-	건고 228 (86.5.23)	· 헤드부지 (667㎡)
변경	1	제1송전선로	구암동	개정동	-	2.147	-	건고 228 (86.5.23)	· 선하지 (3,225㎡)포함

변경내용 : 지중화구간 연장 제외 L=1.38km, 선하지면적 포함 : 3,225㎡

2.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5- 9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변전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변전소)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7월 2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변전소)
 - 2) 명 칭 : 군산 변전소 23KV SIS실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결정조서(m ²)	금회 실시계획(m ²)	비고
군산변전소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104,596	증축1동 연면적 125.06m ²	군산고-120 2009. 12

4.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실시계획인가 ~ 2015. 11.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아래 조서

연 번	토 지 소 재 지 (군산시)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등기부등분)		비 고
	면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명	
1	임피	보석	114-1	잡	78,169	78,16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2	“	“	114-2	도	2,536	2,53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3	“	“	115-2	답	8	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4	“	월하	816-1	잡	23,883	23,88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계					104,596	104,596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고시 제2015 -102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고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군산시 제672호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생물보호구역(구명칭.조수보호구역)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5. 7. 23.

군 산 시 장

- 1. 명 칭 : 군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 2. 해제내역

구분	소재지	면적(m ²)	서식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구역 (구.조수보호구역)	나포면 나포리 산4 외 115필지	132536.5	청둥오리, 고니, 쇠오리

3. 세부 지역현황 : 붙임조서참조

4. 해제사유

- 야생생물보호구역 존속기간 만료
- 방해요인 증가 등으로 인한 보호구역 질 저하
- 사유지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보호구역해제

5. 해제년월일 : 2015. 07. 23.

6. 기 타 :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군산시 환경위생과(2063-454-3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도래지구(나포) 편입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목	지적(㎡)	비고(편입토지)	지정연월일
	시군군	읍면동	리	지번				
계						1,199,902	132536.5	
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7	전	293	287	1997.01.01.
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7-1	전	810	235.2	1997.01.01.
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7-2	도	2	2.4	1997.01.01.
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7-3	전	955	943.2	1997.01.01.
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8	잡	4,520	666.1	1997.01.01.
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8-1	도	1,064	177.8	1997.01.01.
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1	답	2,413	35.5	1997.01.01.
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2	답	2,371	1355.4	1997.01.01.
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3	전	334	324.9	1997.01.01.
1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4	전	245	237.4	1997.01.01.
1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5-1	답	403	394.4	1997.01.01.
1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5-2	구	165	154.5	1997.01.01.
1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6-1	답	1,610	1613	1997.01.01.
1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6-2	구	43	29.4	1997.01.01.
1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7-1	전	559	235	1997.01.01.
1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7-2	구	69	40.8	1997.01.01.
1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8-1	답	4,542	1564.8	1997.01.01.
1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8-2	답	2,883	87.4	1997.01.01.
1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28-3	구	245	103.2	1997.01.01.
2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5	대	8,801	5793.4	1997.01.01.
2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5-2	전	238	155.5	1997.01.01.
2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5-8	도	225	115.3	1997.01.01.
2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5-9	도	237	230.3	1997.01.01.
2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6-5	구	36	39.4	1997.01.01.
2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7-1	전	1,027	1008.4	1997.01.01.
2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7-2	도	264	256.6	1997.01.01.
2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7-3	전	89	88.7	1997.01.01.
2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7-4	도	558	559.1	1997.01.01.
2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7-5	도	8	10.9	1997.01.01.
3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8	전	165	98.9	1997.01.01.

3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41-1	전	1,316	217.4	1997.01.01.
3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81-6	도	40	2.8	1997.01.01.
3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83-2	도	251	0.7	1997.01.01.
3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84-1	도	284	174.7	1997.01.01.
3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88	대	545	89.3	1997.01.01.
3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89	대	696	382.4	1997.01.01.
3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89-1	도	18	0	1997.01.01.
3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0	대	503	482.9	1997.01.01.
3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0-1	도	23	21.9	1997.01.01.
4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1	대	569	557.1	1997.01.01.
4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1-1	도	16	16.3	1997.01.01.
4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2	대	599	600.1	1997.01.01.
4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2-1	도	22	24.3	1997.01.01.
4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3	대	509	513.1	1997.01.01.
4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4-1	대	208	191.4	1997.01.01.
4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4-2	대	212	210.7	1997.01.01.
4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4-3	도	3	9.5	1997.01.01.
4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5	대	258	101.9	1997.01.01.
4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8	대	374	22.6	1997.01.01.
5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499	대	344	12.4	1997.01.01.
5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0	대	675	637.8	1997.01.01.
5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1	대	1,533	1492.1	1997.01.01.
5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1-1	대	414	279	1997.01.01.
5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2	대	109	107.2	1997.01.01.
5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3	대	208	175.9	1997.01.01.
5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4	대	281	10.7	1997.01.01.
5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5-3	대	202	184.9	1997.01.01.
5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6	전	1,150	1102.5	1997.01.01.
5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7-1	대	702	682.6	1997.01.01.
6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7-2	대	53	54.4	1997.01.01.
6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7-3	전	241	282.8	1997.01.01.
6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7-5	대	922	907.5	1997.01.01.
6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7-6	대	607	578.2	1997.01.01.
6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8	전	1,124	1122.2	1997.01.01.

6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09	전	1,045	32.1	1997.01.01.
6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13	전	815	12.3	1997.01.01.
6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13-3	도	215	50.1	1997.01.01.
6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24-2	도	1,055	0.6	1997.01.01.
6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44	전	347	145.8	1997.01.01.
7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45	대	1,302	219.9	1997.01.01.
7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554	임	35,248	20530.4	1997.01.01.
7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26	도	172	172.5	1997.01.01.
7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27	구	770	500.8	1997.01.01.
7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28	도	803	356.4	1997.01.01.
7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39	도	136	130.6	1997.01.01.
7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45	도	15,435	484.3	1997.01.01.
7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48	천	928,949	3.2	1997.01.01.
7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799-2	구	1,943	55.3	1997.01.01.
7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4	임	10,810	7980.4	1997.01.01.
8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5-1	임	14,579	8811.7	1997.01.01.
8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6	임	8,231	9076.4	1997.01.01.
8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7	임	1,485	1582.8	1997.01.01.
8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7-1	임	4,563	4848.1	1997.01.01.
8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7-2	임	4,564	4511.1	1997.01.01.
8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8	임	7,636	6848.2	1997.01.01.
8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 9	임	17,845	13475.5	1997.01.01.
8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 10	임	4,146	310.5	1997.01.01.
8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2-1	임	496	25.4	1997.01.01.
8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2-2	임	8,291	3614.3	1997.01.01.
9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2-3	도	99	114.5	1997.01.01.
9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2-5	임	2,698	980.5	1997.01.01.
9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1	임	899	231.3	1997.01.01.
9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2	임	32,427	8292.4	1997.01.01.
9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3	도	678	712.5	1997.01.01.
9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4	임	103	300.1	1997.01.01.
9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5	임	397	55.8	1997.01.01.
9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6	도	189	83.4	1997.01.01.
9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7	도	3,158	2482.2	1997.01.01.

9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8	임	73	98	1997.01.01.
10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9	도	806	1106.7	1997.01.01.
10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10	임	77	128.7	1997.01.01.
10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12	임	5,559	387.4	1997.01.01.
10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15	도	675	358.1	1997.01.01.
10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14-17	임	300	332.3	1997.01.01.
10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2-2	도	180	172	1997.01.01.
10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 25-1	임	13,860	67.6	1997.01.01.
107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5-5	도	298	293	1997.01.01.
108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5-6	임	198	87.7	1997.01.01.
109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6-2	임	235	268	1997.01.01.
110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6-3	도	1,289	758.6	1997.01.01.
111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6-4	임	245	150.6	1997.01.01.
112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6-5	임	11,694	1578.8	1997.01.01.
113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6-6	도	360	303.2	1997.01.01.
114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6-7	도	648	0.5	1997.01.01.
115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6-8	도	1,624	1267.7	1997.01.01.
116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6-9	임	67	53	1997.01.01.

군산시 고시 제 2015 - 10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24.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미장지구 A3블럭 제일풍경채아파트
2. 사업주체
 - 가. 토지 소유자
 - 1) 명 칭 : (주)영우홀딩스
 - 2) 대표자 : 유 미 정
 -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에스케이허브블루 1507호
 - 나. 등록사업자(공동사업주체)
 - 1) 명 칭 : 제일건설(주)
 - 2) 대표자 : 유 재 훈
 - 3)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38-13, 3층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미장지구 A3블럭
 - 나. 주택구분 :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 나. 대지면적 : 38,911.0000m²
 - 다. 건축면적 : 7,535.6133m²
 - 라. 연 면 적 : 130,622.3894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9동 20~25층, 871세대
 - 전용 79.1975m² 150세대
 - 전용 84.9038m² 571세대
 - 전용 84.3536m² 150세대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 사 업 비 : 204,618,672천원

- 아. 사업기간 : 2013. 12. ~ 2016. 03.
4. 사업계획변경 내용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 가. 경비실 위치 이동
- 나. 조경계획 변경
- 다. 단위세대 외측 창호 유리 변경 및 기타 변경사항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년 7월 24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5 - 1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8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21.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대명 현대메트로타워2차 신축공사

2. 사업주체

1) 명 칭 : (유)현대주택건설

2) 대표자 : 조성석

3)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59, 현대한솔@ 101호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385-1번지외 37필지

나. 주택구분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나. 대지면적 : 26,247.1000m²

다. 건축면적 : 18,746.9723m²

라. 연 면 적 : 145,976.4663m²

마.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 30~40층, 아파트 5동 942세대

- 전용 84.9800m² 308세대

- 전용 84.9648m² 316세대

- 전용 84.9303m² 318세대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169,459,600천원

아. 사업기간 : 2013. 2. ~ 2016. 6.

4. 사업계획 주요변경 내용

가. 사업기간의 변경

- 1) 당초 : 2013. 2. ~ 2016. 9.
- 2) 변경 : 2013. 2. ~ 2016. 6.

나. 기타 변경 사항

- 1) 옥상 난간 형태 변경 : 투시형난간 ⇒ 콘크리트 난간
- 2) 각동 옥탑층 옥탑 형태 변경
- 3) 209동 연결통로 구조 변경
- 4) 지하주차장 천정 마감 변경
- 5) 조경시설중 바닥분수를 팔각정자로 변경

5.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일 : 2015년 7월 20일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5-10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의료원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5. 7. 31.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지곡동 29-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 명 칭 : 군산의료원 부대시설(장례식장)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설명	결 정(m ²)	실시계획 변경(m ²)		비 고
		당초(연면적)m ²	변경(연면적)m ²	
종합의료 시설 (군산의료원)	49,665.9	-본 동 26,127.09 -테니스장 창고 72 -주차장차고 54	-본 동 26,127.09 -테니스장 창고 72 -주차장차고 54 -장례식장 2,362.08	장례식장 별동증축


4. 사업시행자
 - 가. 주소 : 군산시 의료원로 27
 - 나. 성명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1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실임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임 생략

군산시 고시 제 2015-106 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8. 1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1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산 북동 3589-4	전라북도 군산시 부 원로 124 (산북동)	20150721	20100125	부곡지구와 원산북지구 연 결하는 도로로 합성어를 사용
2	전라북도 군산시 소 룡동 1349-44	전라북도 군산시 설 림3길 35 (소룡동)	2015072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 여
3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동 786-4	전라북도 군산시 남 수송6길 3-6 (수송 동)	20150729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4	전라북도 군산시 산 북동 1987-2	전라북도 군산시 외 향로 295-2 (산북 동)	20150723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소 룡동 1565-3	전라북도 군산시 소 룡1길 15-1 (소룡 동)	20150723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6	전라북도 군산시 경 암동 651-18	전라북도 군산시 경 암1길 115-4 (경암 동)	20150724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7	전라북도 군산시 중 양로1가 24-18	전라북도 군산시 아 리랑로 3-2 (중앙로 1가)	2015072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8	전라북도 군산시 미 룡동 872-1	전라북도 군산시 대 학로 549 (미룡동)	20150724	20100125	군산대학교를 지나는 도로
9	전라북도 군산시 오 식도동 930	전라북도 군산시 가 도안1길 67 (오식도 동)	2015072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 로명 부여
10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도암리 268-2, 268-8, 268-7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마동2길 79-1	20150803	20070528	도암리 마동 마을 소재

1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99-4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장전길 12	20150803	20070528	옥서면 장전마을 소재
12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리 8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길 2	20150803	20090508	섬이름 사용
1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4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191 (미장동)	20150803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4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057-1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95-10 (산북동)	20150803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15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057-4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295-4 (산북동)	20150803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1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093-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임피중길 61	20150803	20100125	서수리 임피중학교 소재
17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16-3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45-1 (산북동)	201508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53-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4길 2 (수송동)	20150803	20100125	수송택지 개발지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장전길 25		20150728	20070528	옥서면 장전마을 소재

군산시 공고 제2015 - 113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7월 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나. 명 칭 : 남성환경 부지정리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결 정(m ²)	규모(m ²)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47,188	18,781	사업구역내 부지 정리를 위한 절토 및 정지작업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
 - 나. 성 명 : (주)남성환경 대표 이충기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13. 11. 22 ~ 2015. 5. 30
6.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5-118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5년 7월 24일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구암동 276- 5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2) 명 칭 : 154kV 동군산~장항,군산 송전선로 지중화 인출정비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	실시계획(변경)인가		비 고
			당초	변경	
전기공급 설비	제1송전선로	L=2.147km	철탑 667m ²	3.892m ² 철탑 667m ² 선하지 3,225m ²	변경결정 군산시2015-94 호 (15. 7. 17)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 2)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실시계획승인일 ~ 2015. 09. 30.

변경 :실시계획승인일 ~ 2015. 12. 30.
4.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조서 참조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구암동	276-5	답	1,958	667	박중희	군산시 구암동 316-2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 167	지상권	
2	군산시 구암동	125-2	구	5,681	78	한국 농어촌공사	-	-	-	-	
3	군산시 구암동	284	대	2,202	621	오금수	군산시경암동 656-19	-	-	-	
4	군산시 구암동	286-2	답	2,881	562	박중희	군산시 구암동 316-2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 167	지상권	
5	군산시 구암동	286-5	답	2,881	656	이성근	군산시 양암1 길 45(조촌동)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 167	지상권	
6	군산시 구암동	288	답	2,942	194	이길순	군산시 신영동 10-20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 167	지상권	
7	군산시 구암동	289-3	답	2,080	63	양병성외 1인	군산시 나운동 수송금호어울 림 아파트 103-1601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 167	지상권	
8	군산시 구암동	289-5	답	5,254	971	김경자외 1인	익산시마동13 7-1주공아파 트 209-103	-	-	-	
9	군산시 구암동	604	구	3,575	80	농림부	-	-	-	-	
소계					3,892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분할개시결정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5-1202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5. 7. 23. ~ 2015. 8. 12.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산		월명	14-10	대	119	전동*	1948.9.23.	군산시 월명동 ****	남궁*
군산		월명	14-12	대	122	전동*	1948.9.23.	군산시 월명동 ****	김종*
군산		월명	36-1	전	155	최성*	1969.12.16.	군산시 축동로 ****	한지*
군산		오룡	846-4	대	431	윤희*	1963.6.6.	군산시 오룡로 ****	강태*
군산		죽성	23-12	대	115.7	김정*	1935.3.3.	군산시 싸전길 ****	길석*
군산		수송	479-70	대	238	김경*	1963.10.10.	군산시 수송동 ****	서상* 외1
군산		산북	1876-4	대	221	구민*	1992.4.23.	군산시 옥도면 ****	김상*
군산	대야	산월	533-1	대	627	송동*	1965.3.15.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전수*
군산	대야	산월	532-1	대	184	송동*	1965.3.15.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전수*
군산	대야	산월	534-6	대	94	송동*	1965.3.15.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전수*

군 산 시 장

2015년 7월



297mm×210mm [백상지 80g/㎡]

군산시 공고 제2015-1218호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2015년 4월 1일부터 동년 6월 31일 동안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임대조건(변경)신고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7. 27.

군 산 시 장

공고기간 : 2015. 4. 27. ~ 2015. 7. 31.

1. 전라북도 군산시 경춘1길 56 (경암동, 경암부향하나로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대표자) 이재완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경춘1길 56 (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임대 주택	임대주택의 종류	10년 임대 [], 5년 임대 [], 매입임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토지임대부 임대 [], 준공공임대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오피스텔 []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 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 조건	39.96㎡	717		7,622,000	67,500	7,622,000	67,500	(변경 전)
				7,995,000	70,800	7,995,000	74,230	(변경 후)
	합 계	717						
임대차 계약기간 2015.05.01.~2017.04.30.								
분양전환 시기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2.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88-22(부향하나로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병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88-22, 1505호(조촌동, 부향하나로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39.96㎡	1				10,000,000	100,000	
	합 계	1				10,000,000	1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5-05-01 ~ 2017-04-30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3.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수송동, 스타펠리스)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강연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0, 103동 705호(수송동, 스타펠리스)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29.458㎡	1	31,900			5,000,000	400,000	
	합 계	1	31,900			5,000,000	4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5-04-30 ~ 2016-04-29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4.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수송동, 스타팰리스)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이창수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0, 103동 905호(수송동, 스타팰리스)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29.473㎡	1				10,000,000	430,000	
	합계	1				10,000,000	43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5-04-17 ~ 2016-04-16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5.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수송동, 스타팰리스)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원서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0, 103동 1203호(수송동, 스타팰리스)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29.473㎡	1	26,000			10,000,000	430,000	
	합계	1	26,000			10,000,000	43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5-05-06 ~ 2016-05-05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6.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90(지곡동, 지곡동 엠코타운)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최영애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90-0, 105동 702호(지곡동, 지곡동 엠코타운)						
	주택 유형	아파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84.95㎡	1				150,000,000		
	합계	1				150,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5-06-29 ~ 2017-06-29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7.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수송동, 스타팰리스)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강송화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0(수송동, 스타팰리스) 102동 802호, 102동 703호						
	주택 유형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35.623㎡	1	68,880			10,000,000	450,000	
	35.623㎡	1	68,880			5,000,000	500,000	
	합계		137,760			15,000,000	95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5-06-10 ~ 2016-06-09 - 2015-06-08 ~ 2016-06-07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군산시 공고 제2015-121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군산시 소룡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5. 7. 28.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룡동 자연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3. 사업시행지 : 군산시 소룡동 1019-6번지 일원
4. 수용재결 대상 : 아래 붙임 참조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5. 7. 28. ~ 2015. 8. 11.(15일간)
6. 열람장소 : 군산시청 게시판
7. 의견서 제출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063 - 454 - 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수용재결 대상
○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소릉		1019-43	대	992	330.6 (992× 1/3)	군 산 시 신 흥 시 동 39-11	이강석	군산시 월명로 260	한국의환은 행 (군산지점)	가 압 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나길 5,본관1층	케이제이제1차대부유한회사			
								군산시 공단대로 579, 신용보증기금 빌딩 2층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카드			
								군산시 대학로 331(나운동)	국민은행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 빌딩 7층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80-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시 월명로 252, 5층 동부빌딩	서울보증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3	한국해운조합			근 저 당
								군산시 경암동 627-111	박현숙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경원동3가) 전북채권관리팀	신용보증기금			채 권 압 류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33,2층(성수동1가, 삼일빌딩)	펜타캐피탈대부(주)			
소릉		1019-43	대	992	330.6 (992× 1/3)	군 산 시 양 안 시 로 동 5 4 , F 201호(조 춘동)	이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3	한국해운조합	근 저 당		
								군산시 경암동 627-111	박현숙			
소릉		1019-6	대	3,936	29.9 (3,936× 30/3,936)	군 산 시 소 룡 전 3 30, 그 린 선 동 서 해 맨 1 0 1 707호	이성환	없	음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소릉		1019-6	대	3,936	33.9 (3,936× 40/3,936)	군산시 소릉 1019-6	김석산	군산시 조촌로 1239(군산수협)	수협	가압 류	
								군산시 소릉동 1542(군산지점)	신용보증기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나운동 지점)	한국주택은행		
								군산시 경장동 464-1	팔마신협		
								군산시 월명로 252, 5층 동부빌딩	서울보증보험		
								군산시 신영동 15-11	군장새마을금 고		
소릉		1019-6	대	3,936	33.9 (3,936× 40/3,936)	군산시 나 운3동 유 원아 파트 3동 602호	박용여	없	음		
소릉		1019-6	대	3,936	31.9 (3,936× 32/3,936)	군산시 풍 전4길 10, 가동 105 호(소릉동, 남전주택)	김옥자	군산시 조촌동 828-1(금암동지점)	수협		
								군산시 소릉동 854	군산세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상록수제일차 유동화전문유 한회사		
소릉		1019-6	대	3,936	31.9 (3,936× 32/3,936)	군산시 소릉 1019-6	윤영철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군산시		
								군산시 소릉동 854	군산세무서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소룡		1019-105	대	106	106	군산시 소룡동 1019-105	이흥권	없	음		
소룡		1019-55	대	70	70	군산시 해망로 447, 507호 (소룡동, 성원상떼빌@)	황정금	군산시 상신3길 26, 501호(나운동, 나운동 하이스빌)	서옥조	가압류	
								군산시 조촌동 828-1(금암동지점)	수협		
								군산시 조촌동 774	농협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6길 96, 101동 302호(사당동, 사당휴먼시아)	차유순	근저당	
								군산시 번영로 17(경장동)	김미숙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	신용보증기금		
소룡		1019-6	대	3936	161.9 (3,936×162/3,936)	군산시 해망로 447, 507호 (소룡동, 성원상떼빌@)	황정금	군산시 소룡동 854	군산세무서	가압류	
								군산시 조촌동 828-1(금암동지점)	수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농협		
								군산시 번영로 17(경장동)	김미숙	근저당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전주지점)	신용보증기금		
소룡		1019-110	대	17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 우성아파트 806호 893-15	박윤석	없	음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소릉		1019-76	대	18	18	군산시 풍전3길 12가동 110호 (소릉동, 남전주택)	박준영	군산시 조촌동 774	농협	가압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80-11	자산관리공사		
								군산시 조촌4길 89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릉		1019-108	대	144	144	군산시 소릉동 1019-108	오영두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다동, 예금보험공사)	파산채권예사 자산추산금 주스은행보 자스은관보 주마행계협 식일의인공	근저당	
소릉		1019-112	대	48	48	군산시 소릉안3길 19코오롱마트 (산북동)	오순옥	없	음		

○ 물건(지장물)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및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소룡동		1019-6	주택1	블럭, 스테트	18.71	소룡동 풍전3길 30 그리서해맨션 101동 707호	이성환	없		음	
			1019-6	블럭, 슬래브	3.84						
			1019-6	샤시 (0.8×1.7)	1						
			1019-6	CON'C	1						
소룡동		1019-105	주택	블럭, 스테트+함석	17.28	소룡동 1019-6	최훈	없		음	
			가추	블럭, 스테트	3.12						
			가추(보일러)	목조, 함석	1.2						
			출입문	샤시 (0.7×1.7)	1						
소룡동		1019-6	주택1 (판매점)	블럭, 스테트+함석	31.92	나운3동 유원아파트 3동 602호	박용여	없		음	
			출입문	샤시 (3.0×2.0)	1						
소룡동		1019-6	주택1	블럭, 스테트	11.22	소룡동 1019-6	윤영철	없		음	
			주택2	블럭, 슬래브	7.26						
			출입문	목재 (0.8×1.5)	1						
			다락방		1						
소룡동		1019-105	주택1	블럭, 스테트	53.24	소룡동 1019-105	이흥권	없		음	
			주택2	블럭, 슬래브	51.72						
			주택2층	블럭, 스테트	20.14						
			출입문	철재 (1.4×1.7)	1						
			문주	0.4×0.4×1.8	2						
			차양	PE스레트+스레트	1						
			화단1		1						
			철계단	0.6×0.25×3.20	1						
			영업보상	광덕수산	1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규격	수량 및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명)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소룡동		1019-6	주택	블럭, 스테트	14.88		미상	없		음							
			소룡동	목재 (0.7×1.5)	1												
			소룡동		1												
소룡동		1019-6	주택	블럭, 스테트	19.72		미상	없		음							
			소룡동	블럭, PE스레트	8.12												
			소룡동	하이샤시 (0.7×1.6)	1												
			소룡동		1												
소룡동		1019-6	주택1	흙벽돌, 스테트+합석	14.19		미상	없		음							
			주택2	블럭, 슬래브	8.5												
소룡동		1019-55	창고 (작업장)	블럭, 스테트+합석	38.1	해망로 447, 106동 507호(성원쌍떼빌@)	황정금	없		음							
			출입문	하이샤시 (2.1×2.7)	1												
소룡동		1019-6	주택1층	블럭, 슬래브	34.2	소룡동 1019-6	윤충국	없		음							
			주택2층	조립식판넬	11.76												
			계단실	슬래브	2.28												
			철계단	B0.7×0.2×L1.6	1												
			출입문	샤시 (0.7×1.7)	1												
			차양	목조, 썬라이트, 판넬	2												
소룡동		1019-6	주택	블럭, 스테트+합석	47.88	소룡동 1019-6	윤충국	죽성동 44-2	전북상공군신고	가류	안						
			가추	블럭, 스테트	1.28							해망동 1003-45	군산해일협조합				
			출입문	샤시 (0.8×1.7)	1									죽성동 26-2 (해망동지점)	군산시업조		
			간판		1											시청로 17	군산시
			차양		1												
소룡동		1019-6	주택	블럭, 스테트	22.0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우성@ 2동 806호	박윤석	없		음							
			가추	목재, PE	5.78												
			출입문	목재 (0.7×1.7)	1												
			다락방		1												